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4), 47-66, 2024.11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pISSN 1598-1487 eISSN 2671-7247

JKSARM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개념과 특성에 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이재윤(Jaeyun Lee)[1], 김의진(Uijin Kim)[2], 박태선(Taesun Park)[3]

Email: wodbs4697@naver.com, 202330301@hufs.ac.kr, 88_park@naver.com

1 제1저자 국회의장실 기록비서관
2 공동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전공 석사과정
3 교신저자 더아카이브연구소 소장

OPEN ACCESS

논문접수 2024.10.14
최초심사 2024.10.21
게재확정 2024.11.15

ORCID

Jaeyun Lee
https://orcid.org/0009-0001-1945-2504

Uijin Kim
https://orcid.org/0009-0005-7854-5099

Taesun Park
https://orcid.org/0009-0002-0323-0306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이 논문은 그간 학계에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설명책임성 확보, 국회의원 감시 등 의정활동(legislative activity) 기록과 그 효용을 소극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맥락과 효용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부재하다는 인식 아래 기획되었다. 의회 기록 중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과 그 생산 맥락, 즉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이 가지는 고유한 개념과 특성(identity)을 살피고, 대표적인 의정활동인 상임위원회 활동과 기록이라는 사례를 통해 숙의적 가치를 비롯한 그 효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으로서 주어진 최소한의 업무를 넘어서, 해당 직무권한을 해석하는 개별 의원의 고유하고 다양한 관점이 기록 생산과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을 수행해가는 데 작용하는 주요 동기(motives)로 개인, 사회, 정당, 의회 등 네 가지 요인이 있으며, 질의서를 비롯해 이 과정에서 생산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은 현안에 관한 개별 의원의 관점뿐 아니라 숙의(deliberation)의 절차를 드러낼 수 있다.

ABSTRACT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context and utility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plored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members of parliament and legislative activities. It uses the case of standing committees to reveal the utility of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including their deliberative value.

Keywords: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상임위원회, 숙의, 정치문화
Member of parliament,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Standing committee, Deliberation, Political culture

1. 서론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따라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국회 소속기관이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수·생산한 기록물을 국회도서관 산하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관 대상이 되는 기록물에는 회의록이나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기록물, 국회의정을 비롯 국회 소속기관장이 업무 중에 생산한 기록물이 포함된다. 「2023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국회 소속기관 및 위원회 생산 기록물'(이관)과 '국회의정활동기록물'(수집)로 구분되는데, 그중 의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은 현재 이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신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본 정책」(2017, 이하 「의정활동기록 정책」)을 별도로 마련해 기증의 방식으로 수집하고 있다[1]. 단 2016년. 2020년도 교체된 의원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수집한 기록(김장환, 2018, 52)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만 의원 개별의 '기증' 방식으로 국회기록보존소에 보존되고 있으며[2], 시스템을 통한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legislative activity) 기록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 및 국회의 기능과 역사를 보여준다. 의원 각각의 의회정치활동을 망라하는 위 기록은 국가와 지역에 관련된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적인 현안·의제를 포함할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의원들의 관점과 개성이 연결된 결과물로서 그 연구적 가치는 상당하다. 예컨대 의정활동 중에 생산되는 자료요구서, 발표자료, 질의서 등은 의정활동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기획, 자료 분석, 의견 형성, 질의 및 토의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의정활동에 대한 논의가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게 이루어져 온 상황과 기록화에 앞서 의정활동 기록의 범위, 특히 무엇을 공(公)적 기록으로 다뤄야 할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했던 기존 기록관리의 관점으로 인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화 실천은 매번 미뤄져 왔다. 이러한 현실은 의정활동 기록의 고유한 성격과 그 내용, 나아가 효용에 대한 학술적인 탐색과 함께 이제는 기록화 실천을 도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정활동 기록화 관점에서, 의정활동의 고유한 성격을 탐색하고 의정활동 기록의 생산 맥락을 메워나가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입법자로서 가지는 고유한 성격과 그 정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근거가 되는 헌법이나 국회법이 의정활동의 최소한의 조건-권한과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정활동의 성격을 탐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법률 조항 이상으로 의원 개개인이 직무권한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직무권한에 대한 해석 범위가 넓을수록 의정활동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넓어질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해야 할 점은 본고의 목적이 의정활동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의하기보다 탐구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고정된 형태나 일반적인 정의로 규정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과 현상 그리고 시대상을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의정활동의 성격을 계속적으로 탐구해가면서도 기록화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현재 본고가 지향하는 방향에 가깝다. 이러한 방향은 정치분야의 기록과 아카이브가 향후 참여와 숙의로 이어지는 적극적인 정치문화를 형성해가는 기반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인한다.

실제로 헌법·국회법 등은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법안 제·개정, 예·결산 심의, 행정부 감시·견제, 외교활동으로 규정짓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회의원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은 이보다 더 다양하다. 가령 적극적인

1) 김장환(2018)에 따르면, 2013년 국회기록보존소 직재 개편과 2014년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로드맵>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망라적 수집'이 정책 목표로 갱신됨에 따라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이 아닌 「국회도서관법」 제2조의 4항(국회도서관 직무)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수집'이 반영되었다.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본 정책」(2017)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이후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2020)을 만들어 배포했다. 국회의원 기록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자세한 과정은 김장환(2018)의 연구를 참고.

2) 『2023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Ⅻ 국회기록관리'에 따르면 정당·기타 유형을 제외한 의정활동기록물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 57,729점과 '국회의원 의원실 기록물' 65,798점을 보유하고 있다(2023.12.31. 기준).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수준의 정치 활동, 지역구 활동이나 선거·언론·정당·시민사회·정책연구 활동 등이 두루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법률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출직으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궁극적인 노력의 일환일 뿐 아니라 이 경험이 입법과정[3]을 비롯한 의회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록화하기에 앞서, 본고가 다루려는 기록 대상의 속성이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는 방법론과 조응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관리는 효율적인 기록 통제(record control)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rerordkeeping system)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처리과' 수준에서 기록이 생산된 시점부터를 '기록보유'로 상정하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만한 선별·평가·이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선천적 기록 통제가 아닌 후천적인 기록 조사·평가·수집을 거쳐야 하는 사후적인 기록화의 경우 그 목적은 기록 통제가 아닌 기록 생산맥락과 함께 기록을 조사·수집하고 기록의 성격에 맞게 고유한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등 방법론을 개발, 이를 정책으로 명문화하는 것에 있다.

본고에서 정의하는 기록화란 사후적 기록화이다. 이는 국회 소속기관에서 공(公, Official)식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기록물인 국회기록보존소 관리대상 기록물을 제외한, 지역구사무실을 비롯한 의원실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 과정에서 산출된 기록물, 즉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된 의정활동 기록 관련 선행연구들이 상정한 기록화 목적과 방법론들이 본고의 기록화 작업과 합치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대안적인 방안을 함께 간구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그들이 수행하는 의정활동의 특성을 탐구하고 결과적으로 기록화 전략[4] 수립에 앞서 이에 근간이 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생산맥락과 그 효용을 도출하는 것까지를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과 관련해 기록학계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었다. 대개 국회기록보존소 이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회의원(실)이 생산한 의정활동 기록을 정의해 가시화하고 업무분석·순차 분석을 통해 어떤 기록이 어떤 과정에서 생산되는지,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5] 국회기록보존소로 체계적으로 이관되려면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제안한 연구들이 있다. 즉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체계적인 국회기록물관리제도 안에서 원활히 확보·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이 생산한 기록물을 '공식기록'과 '개인 기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록 성격에 맞는 별도의 분류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도 우선은 '공식(조직) 기록'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해왔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의정활동 기록의 정의와 기록화 목적, 국회의원 직무권한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특성 순으로 분석한다.

3)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법제기준과 실제>(2024)에서는 입법과정을 "법 제정·개정과정을 넘어 국민의 대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통합·조정함으로써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을 포괄해 정의하고 있다.
4) 본고에서 논의하는 기록화 전략은 기존 한스 붐스(Hans booms)가 주창한 도큐멘테이션 플랜(documentation plan)과 이에 기반한 전략과는 구분되며, 기록의 수집·정리·기술 등 제반 과정을 둘러싼 방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5)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국회도서관이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2.1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정의와 기록화 목적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었다. '국회의원 개인기록', '국회의원 활동기록', '의원기록물' 등으로 논의되다가 점차 '의정활동기록(물)'으로 여러 개념이 통합되는 흐름을 보였다. 먼저, 이원영(2004, 13)은 '의회 기록을 이루는 주요 출처 중 하나인 국회의원이 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정의하고 이를 크게 정치활동 기록, 개인 기록, 사무실 기록으로 구분해 바라보았다. 특히 의원의 정치활동을 입법기능, 국정 감독기능과 함께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고, 정치활동 기록에 입법활동, 국정감독 활동을 비롯해 정당 및 선거 활동, 지역구 활동기록을 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록 유형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은정과 임진희(2009, 122)는 국회의원 활동기록을 "하나의 조직으로서 국회의원이 공적, 사적 업무활동 과정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을 통칭"해 정의했다. 위 연구에서 공(公)과 사(私)의 구분이 더 두드러진다. 이 연장선에서 최혜영과 이승일(2019, 101)은 국회의원, 정당, 위원회 소속기관 기록물을 포함해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로 정의하고, 이에 속하는 '국회의원 기록'을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 활동 과정에서 생산 및 접수한 개인 기록물과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을 통칭"하고 있다. (개인) 정치활동과 공식 업무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상 의정활동의 맥락에서 이 둘은 밀접하게 얽혀있다.

한편 우윤식(2019, 5)은 "지역구 활동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으로 생산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거나 수집되지 않은, 즉 현재 국회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기록"을 '의원기록물'로 명명했다. 단, 앞에서 개인 기록 역시 국회의원 기록으로 포괄해 바라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지역구 활동 기록의 경우 '개인 기록'의 성격을 가지며, 실제 의원이 당선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원기록물' 범주에서 제외했다.

장연희와 윤은하(2024)는 국회의원 기록을 크게 '국회소속기관 기록물'과 '의정활동 기록물'로 구분하고,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이 규정한 국회기록보존소 이관대상 기록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의정활동 기록물'은 2017년에 수립한 「의정활동기록 정책」에 따라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로,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 기록물', '민간기록물' 등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접수된 기록물"(장연희, 윤은하, 2024, 188)을 포괄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운용하는 정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본고는 그중 '국회의원 기록물'에 주목했는데, 국회의원 기록물이란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으로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접수하였거나 국회의원 개인의 의정 및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로 이해했다. 눈에 띄는 점은 의정과 정치를 구분해 서술한다는 점이다. 이상 관련 개념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 관련 개념들

용어	출처	의미
의원 기록	이원영(2004)	국회의원이 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 정치활동기록, 개인기록, 사무실 기록으로 구분
국회의원 활동기록	한은정과 임진희(2009)	하나의 조직으로서 국회의원이 공적, 사적 업무활동과정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을 통칭
국회의원 개인기록	황길례(2010)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공기관이자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들이 그들의 개인 업무나 개인사와 관련하여 생산·수집한 기록. 단, 공적 기록과 개인기록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국회의원 기록	최혜영과 이승일(2019)	국회의원 개인이 정치활동 과정에서 생산 및 접수한 개인 기록물과 국회의원실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을 통칭
의원기록물	우윤식(2019)	지역구 활동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다양한 활동으로 생산한 여러 가지 기록 중에서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되거나 수집되지 않은 즉, 현재 국회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기록
의정활동 기록물	장연희와 윤은하(2024)	국회 소속기관에서 생산·접수하지 않은 국회의원 기록물, 정당기록물, 민간기록물

위 논의를 종합해보면, 대개 현재 「국회기록물관리규칙」에 의한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되지 않고 있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식 기록뿐 아니라 개인 기록을 포괄하고 있는 양상을 띤다. 이는 동시에 공(公)적인 업무와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해 국회기록관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기존의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실 공식 업무와 의원 개인 업무를 구분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구분은 국회의원과 의정활동 기록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

국가의 역할이나 정치, 입법과정[6]의 범위가 넓어져 온 만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존재하는 그 자체'일 뿐 고정되거나 일반화된 정의를 가질 수 없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계-내-존재로서 '특정한 세계'에 반응하는 말과 행위가 의정활동의 주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개념 또한 사회 구성원과 수많은 접점을 형성하는 활동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입법 과정 안에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지역구민)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국회의원의 역할(Lucas, 1978, 277)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정활동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을 수집·보존·활용하는 작업 또한 고정해 이해하거나 명징하게 구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와 상황과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정활동의 성격을 면밀하게 고찰하면서도 그 기록의 폭넓은 효용을 검토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선행한 국내연구들은 서문에서 밝혔듯 대개 기록관리시스템(recordkeeping) 구축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가령 국회기록보존소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실 등에 중간기록물관리기관(최혜영, 이승일, 2019)이나 별도의 의원기록관(우윤식, 2019) 등을 설립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기록관을 통해 의정활동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기록 등록·분류·평가·폐기 등을 수행케 하고 '영구기록물'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최혜영, 이승일, 2019)한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효율성 혹은 기록 통제의 관점이 앞세워진 것이다.

한편 의정활동 기록의 효용을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감시 혹은 의정사 연구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이 가진 특성과 이에 다른 잠재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미비하다. 의회 기록의 특질에 관해 연구한 이원영(2004)의 연구 정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제도 중심의 기존 논의들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는 국회의원의 기록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점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단순히 권력 감시의 수단[7]으로만 인식해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의미와 효용을 모색하기 어렵게 한다. 의정활동 기록이 가지는 폭넓은 의미, 특히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개성에 기반한 개인 기록으로의 성격과 의미를 십분 고려한 논의라 볼 수 없다.

6) 입법과정에 대한 논의는 이원영(2004)이 각주 16번을 통해 서술한 바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한다. 국회사무처에서 발행한 <법제기준과 실제>(2024)에서는 입법과정을 "법 제정·개정과정을 넘어 국민의 대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통합·조정함으로써 갈등해결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7) 2023년 12월 15일 열린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국회기록보존소 기록연구관 김장환은 국회의원 기록관리는 결국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실제로 Lucas(1978, 279-280)는 국회의원 기록을 그 지역적인 맥락 밖에서, 관료적 구조로 접근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회의원이 그의 지역구(유권자)와의 관계를 스스로 정의하고 표현하는 방식, 국회의원 기록이 이 관계를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의원 기록의 독특하고 지속적인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곧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고유한 특징이 국회의원의 개성(individuality)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연차가 쌓인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의정활동 기록에 대한 기존의 제도화 논의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며, 위 국회의원 기록을 '개인의 영역'이자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장연희, 윤은하, 2024, 200). 이렇듯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의정활동의 성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그 대안적인 효용을 함께 모색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채 제도화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거나 의정활동 기록의 풍부한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제도가 될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수행되었다.

2.2 국회의원 직무권한과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특성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역할과 권한)을 크게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등 네 개의 부문으로 나눠 소개[8]하고, 크게 헌법에 따른 입법권한과 국정 통제권한을 가지며,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위 의회권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서술한다. 이에 더해 이원영(2004, 7)은 '의원의 정치활동'을 함께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보았다.

한은정과 임진희(2009)는 이처럼 헌법·국회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직무권한을 토대로 국회의원실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먼저 법안 제·개정, 예·결산 심의, 국정 감·조사를 포함한 ① 국정 감독, ② 외교활동, ③ 공직선거 참여, ④ 조직활동, ⑤ 일반 행정이 그것이다. 다만 위의 기능분류에서는 국회의원이 소속을 두고 활동하는 정당 활동이나 사회적 갈등을 조정·중재[9]하는 등의 '정치인으로서의 기능'은 누락되어 있다. 이는 정치활동을 의회와 의원이 수행하는 본질적인 기능으로 꼽고 있는 이원영(2004)의 연구를 제외한 여타 후속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인다. 위 논의를 참고해 반영한 최혜영과 이승일(2019)은 국회의원 기록물을 개인 기록과 공식 업무를 통해 생산한 기록을 포괄하면서 국회의원의 기능을 크게 입법, 예·결산, 국정 감·조사, 지역구 관리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2020)을 통해 국회의원실의 주요 업무를 입법활동, 국정감독활동, 정치활동, 기타활동으로 나누고 각 업무에 해당하는 기능을 입법 활동에는 법안발의와 입법정책 연구개발을, 국정감독활동에는 행정부 견제, 예·결산을, 정치활동에는 지역구 관리와 정당 업무, 언론 및 미디어 활동을, 기타활동에는 의원외교와 공개행사, 개인사/인물사로 분류했다. 이를 단위업무화하여 의원실운영(5년 보존)과 의정활동(준영구 보존)이라는 2개의 단위업무를 기반으로 하는 분류기준표를 제시하고 국회 전자문서 시스템의 기록물철 등록부를 통해 직접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조직으로 간주할 때 기본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직무권한과 기존 논의의 핵심 기능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이는 조직이 조직으로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범주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직무권한은 활동의 조건에 해당하지 활동 그 자체는 아니다. 이러한 범주에는 적극적인 수준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과거에 비해

8) 입법 부문에는 헌법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과 법률 제정·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이 있다. 재정 부분에는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지출승인권 등 기타 권한이 있다. 일반국정 부문에는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계엄해제 요구권이나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등 기타권한이 있다. 외교 부문에는 초청외교활동, 방문외교활동, 국제회의 참석 등이 있다.

9) 한정택(2012, 54)의 연구에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제18대 국회의원들은 '사회갈등 조정'을, '국민의사 대표', '법률 제·개정', '행정부 견제/감시' 다음 가는 의정활동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꼽은 바 있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넓어진 의회의 역할은 누락되어 있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산하 전국상설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는 다양한 현장에서 '을'의 사연과 민원을 받고 적극적으로 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며 관련 현안과 문제를 입법 등의 포괄적인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의 위치와 처지에서 접점을 만들어주는 것"(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2023, 32)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믿음을 공유한다. 이는 선출직으로서 지역민·국민의 신임을 받는 자리이며 동시에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십분 활용하려는 의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처럼 을지로위원회가 적극적인 정치의 역할을 앞세운 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논의된 '의정활동'의 틀로는 을지로위원회의 모든 현장 업무와 갈등 조정 활동을 포괄할 수 없다.

의정활동이나 '국정', 혹은 입법활동(legislative activity, 의정활동과 같은 의미로 쓰임)을 바라보는 국회의원 개인의 관점은 곧 의정활동과 그 산출물인 기록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된다. 가령 A 의원은 '국정'의 범위를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자 '국민이 받은 피해에 대해 문책하고 사안의 잘잘못을 가려 해결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실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생명·안전을 비롯한 헌법에 적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기업이나 개인, 단체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역할과 정치, 국정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인지하고 있는가에 따라 의정활동의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이처럼 국가 사무에 속하면서도 동시에 정치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개개 의원들의 관점은 그들의 활동을 규정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정의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이를 토대로 정당과 함께 정치인 개인은 여론의 신임을 받으며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만일 국회의원의 직무권한 등 헌법·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 기능으로 한정된다면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복합적인 활동과 그로 인해 산출한 기록을 서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식 틀과 근거가 협소해질 수 있다.

3. 국회의원의 특성

직업으로서 의회 정치를 이끌고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일정한 기간 법률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관료와 그 속성에서 차이가 있다(Weber, 1919/2019). 몇몇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개 구체적인 활동까지 지시해주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해당 직위와 권한을 해석하고 활용하여 국민과 국가적 이익, 정치적 동기, 개인적인 사상 등을 토대로 적극적·자율적·주체적으로 활동한다. 국회 안에서 다양한 권한을 통해 궁극적으론 입법권과 국정 통제권 등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음선필, 2013). 동시에 국회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이자,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소속 정당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한다. 게다가 투표에 의해 4년간의 임기 동안 활동하며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선 선거를 통해 재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들이 말해주듯이 기록 생산자로서의 국회의원은 매우 복합적인 특성을 띤다. 기록화 관점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기록화 대상의 속성이 개인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 등 법률 등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주체에 해당하는지를 논고해 볼 수 있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3.1 개인(individual)과 권한이 부여된 주체(authorized agent)

하나의 대상을 기록하기에 앞서 기록하고자 하는 행위와 행위 주체의 속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기록화의 범위와 목적,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기록의 경우 개인이 갖는 고유한 특성은 기록화 과정에서 수집대상에 대한 이해와 전략의 기반이 될 필요가 있다(오명진, 2017). 이때 개인의 삶은 기록 생산 활동이자 기록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고 개인적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내·외적 환경은 생산맥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기록은 개인이라는 자율성을 가진 생산 주체의 독특한 특성이 생산맥락, 기록관리의 과정 모두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오명진, 2017)한다. 이처럼 개인 기록은 일반적으로 표준 등에서 서술하는 조직기록의 생산맥락과는 차이를 보인다. 단순히 생산맥락만 다른 게 아니라, 기록의 범위, 기록화 전략, 기록의 가치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록의 가치나 궁극적으로 보존·전승하려는 내용이 개인·인물 기록의 경우 개인적인 가치나 사상, 그리고 관점(perspective)이라면 조직기록의 경우 기관의 규정이나 정관 등에 의해 부여된 업무기능 그 자체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화 관점에서 기록 생산자이자 기록화 대상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인물 기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록하고자 하는 활동은 임기 안팎 시공간 속 인물의 삶이며, 이를 규정하는 근거는 내·외적 환경과 개인적 특성이 된다. 또 궁극적으로 증거·전승하고자 하는 것은 인물의 고유한 특성과 관점이 될 것이다. 반면 권한이 부여된 주체, 즉 조직기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록 활동은 직접적인 업무활동이 되며, 법과 제도(규정), 업무분장 등에 근거하고 기록을 통해 증거·전승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조직의 통상적인 업무기능이 될 것이다. 행정기관을 기록화할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 책임성, 행정 및 업무 수행의 투명성을 재고하는 등의 목적을 가진다. 개인·인물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관점과 역사를 밝히는 것이다. 즉 기록화의 목표가 해당 의원이 정치적 의제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능·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기록화할 행위 주체와 정체성에 따른 구분

행위 주체	조직·법인체	개인·인물
행위	직접적 업무활동	개인(인물)의 삶
근거	헌법·국회법 등 법과 내부 규정, 분장	내·외적 환경과 개인의 특성
행위 주체의 정체성	통상적인 업무기능	개인의 고유한 관점
기록화 목적	설명 책임성 업무 수행의 투명성 국정운영의 역사를 밝힘	개인의 관점과 역사를 밝힘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종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앞세운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지역구민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과 정부를 매개(interface)하고, 지역구 사무실을 비롯해 국회의원실이라는 한시조직이 이를 보조한다. 한은정과 임진희(2009)는 국회의원(실)을 국가기관 즉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개인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한시조직'으로서의 국회의원실의 업무기능을 분석·도출[10]하고 동시

10) 입법, 국정감독, 외교활동 등 핵심활동과 공직선거 활동, 조직 활동, 일반행정 활동 등 6가지 업무기능을 도출했다. 입법기능에는 법률안 제·개정, 예산 심의, 결산 심의, 청원·진정 처리가 국정감독에는 국정 감·조사, 대정부 질의가, 외교활동에는 방문·초청 외교, 국제회의 참석이, 조직 활동에는 지역구 관리, 후원회 관리, 홍보가, 일반행정에는 일정 관리, 회계 관리, 인사관리, 기록관리가 하위기능으로 포함되어 있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에 '개인기록'의 성격을 참작해 별도의 분류체계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즉 의원의 활동 및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요소를 적절히 활용할 것을 주문했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 생애사 연구 관점(주현미, 2021)[11]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하나의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이 업무를 분석하는 데에 치중해 온 나머지 국회의원의 개성이나 숙의 과정과 같이 그 의정활동이 갖는 성격이나 효용, 이러한 특성에 따른 고유한 분류체계 등 기록화 전략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못했다. 이러한 현실은 의정활동 기록의 풍부한 의미와 그 효용에 대한 상상을 어렵게 한 조건이 되기도 했다.

가령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도입된 업무 분석(DIRKS) 방법론은 기록관리 분야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록을 생산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설계하는데"(한국기록학회, 2008)[12]에 목적이 있다. 국회의원 활동의 어디까지가 '일상적'·'통상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직의 업무분장 등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는지, 애초에 의정활동 과정에 전산시스템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뿐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기록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의제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했는지를 드러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의원이 '어떤 정해진 업무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드러내고 전승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기록화에 앞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기록을 수집·정리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두고 드러내고자 하는지에 따라 기록화 전략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위 논의를 종합하면, 이러한 관점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은 향후 기록화 전략과 방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다. 시기나 의정활동의 유형에 따라, 혹은 기록화의 궁극적 목적에 따라 기록화의 구체적인 방침이 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의원의 속성을 상세히 밝힐 필요가 있다.

3.2 국회의원의 성격

> "의원과 정당은 현재보다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정치 행위자들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직업 정치인으로서 의원은 일단 재선에 잇달아 성공하고 지지 기반을 쌓아 자신의 더 큰 야심과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김한나, 2018)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세 가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첫째 국회의원은 합의체 결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다. 의안발의권,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자료요구권 등의 권한을 통해 국회 운영에 참여하며, 이를 활용해 입법권이나 국정 통제권 등 국회의 권한 행사에 참여한다(음선필, 2013). 즉 '국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이다. 둘째 지역구민을 넘어 국민을 대표한다. 이 권한은 법률이 명시하는 권한이자, 국민으로부터 정당성(authorization)이 부여된 것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accountablity)을 가지고 여론에 대응(responsiveness)할 필요가 있다(Weir & Beetham, 1999, 음선필, 2013, 재인용). 셋째 정당 당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때 정당지도부·당론과 의원의 토론·의결 활동은 상호 구성하는 관계를 가진다. 당론을 일방적으로 실천하거나 의원이 당론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와 같은 세 가지 지위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 국회의 구성원이자 국민의 대표자로서 지위가 우선한다[13].

11) 주현미(2021)는 노회찬 기록을 개인 생애사 연구 관점에서, 즉 개인의 삶과 이를 통해 산출된 기록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2) 서복경(2023)은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연구'를 주제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임기 중 온라인으로 공개되고 있는 의정활동 정보 현황을 파악하고 임기 종료 후 공공기록물로 연계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제도 및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3) 이는 당론과 의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공천 탈락을 비롯한 정당의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에도 해당 징계가 직접 의원직을 박탈할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국회의원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에 맡겨진다. 이 지점은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과 국회법 등에 특정한 직무권한을 부여받기는 하지만 권력에 대한 야심이나 정치적인 이상이라는 목표를 앞세운 개인으로서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국회의원은 앞에서 정한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법률 등에서 권한이나 책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의 활동은 이러한 규정을 넘어선다는 특징이 있다. 단지 이러한 직무권한이 규정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기록의 의미나 고유한 속성을 풍부하게 설명해주지 못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그 산출물인 의정활동 기록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무권한을 이해하는 틀을 넘어 국회의원의 고유한 특성과 개인 생애사 맥락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의 동료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교섭단체인 정당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활동하기 어렵고, 개인적인 동기나 정치적 소신, 전문성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국회의원은 개인이자 단체의 속성을 함께 지니며 이 둘을 떼어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원을 단지 '한시조직'이자 헌법기관으로서만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국회의원과 의정활동의 복잡한 성격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국회의원의 활동은 법률상 주어진 권한을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행사'할지에 대해 자율성을 지닌다. 이는 '법률이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는 그 성격이 일부 다른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록 생산 활동인 의정활동을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관점-DIRKS 등의 업무 분석만으로 의정활동의 의미를 풍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즉 국회의원의 자율성에 기반해, 의원 개개인이 당시 사안이나 의제, 나아가 정치(의정활동) 자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했는지가 의원 기록화, 의정활동 기록화의 큰 비중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정치 제도나 업무기능에 입각한 분류와 개인 관점에 입각한 분류를 어떻게 하나의 컬렉션 안에서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밝혀내는 일이 관건일 것이다.

한편 이는 곧 복합적인 의정활동의 속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는 다음 장에서 의정활동을 그 다양성을 감안해 원내활동과 원외 활동으로 구분하고, 원내활동 중 대표적인 활동인 상임위원회를 사례로 들어 그 활동요인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의정활동의 속성과 그 효용

4.1 원내활동과 원외 활동

의정활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의 범위는 헌법·국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직무권한을 활용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의정활동은 목적과 활동 구역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시민단체에 기초해 의정활동 평가 지표를 연구한 이정희와 윤종빈(2003)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당시 분류에 따라 의정활동을 '회의 부문'과 '비회의 부문'으로 구분하기도 했으며[14] 물리적인 활동 구역에 따라서는 크게 원내활동과 원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정택, 2012, 44).

원내활동은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회정치 활동이다. 입법활동이나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활동, 예·결산 활동 등 헌법·국회법 등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에 해당한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음선필, 2013).

14) 회의 부문은 의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입법 발의·본회의 및 위원회 등과 관련되며, 비회의부문은 입법연구나 사회활동·국회연구모임·정책보고서 발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원내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비롯한 원외 활동으로 의정활동을 분류하는 방식과 일부 겹치는 지점이 있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그리고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소위원회 활동은 입안된 관련 법률을 심사하거나 전문가·관료 등에게 현안을 질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회 위원 간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附議)한다. 이와 같은 원내활동에는 본회의, 전원위, 예결위, 상임위, 특별위, 청문회/공청회, 국정감사 등이 있다.

다른 한편 원외 활동은 '법률에 적시되고 있지 않은',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약 이행, 민원 처리 등 국회의원직의 도덕적 기준선에 부합하거나 유권자의 재신임을 목표로 하는 활동, 정당과 같은 조직관리,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이나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표 등을 위한 의회 밖 활동이 두루 포함된다[15]. 앞서 언급했듯 원내활동은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의해 규정되는 데 반해, 원외 활동의 경우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는 활동으로,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다. 이처럼 주관성의 비중이 크고 근거는 물론 관련 자료가 거의 남지 않은 이유로 원외 활동 평가는 물론 그에 따라 산출된 기록을 연구한 사례 역시 드물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가지는 국회의 구성원, 국민의 대표자, 정당원 등 다양한 대표성과 정체성에 따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활동, 유관단체 활동, 언론 활동, 당직이나 당내 특위 등 정당 활동 등 원외 활동을 수행한다. 제18대 국회의원의 경우 평균 66.2%의 시간을 원내활동에, 38%의 시간을 지역구 활동에 할애했다(한정택, 2012).

<표 3> 의정활동의 유형: 원내활동과 원외 활동

구분	원내활동	원외 활동
근거	헌법·국회법에 의해 규정	의원 개인의 자율성·책임성에 의존
유형	입법활동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결산활동 국정감·조사 등	정당활동 의원연구모임 지역구활동 선거활동 언론활동 등
활동 영역	국회의사당 내부	국회의사당 외부
활용 현황	기관·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및 연구에 활용	자료 절대적 부족

그렇지만 물리적인 활동 구역인 국회(공간)를 중심으로 원내와 원외로 의정활동을 구분하는 방식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며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한정택, 2012). 이 두 활동은 서로의 물리적인 영역을 넘나들기도 한다. 가령 지역구 관련 현안을 국회 안에서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논의하기도 하며, 중요한 의제라면 상임위원회나 정당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거나 의회 밖에서 정략적인 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한편 이 두 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령 입법과정의 맥락에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이나 지역활동을 통해 확보한 자료나 여론을 원내에서 입법·위원회·예·결산 활동으로 이어가기도 하고, 지역주민 등 국민은 국회의원이 어느 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는지를 파악해 그의 전문 활동 영역을 토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하기도 한다. 이처럼 원내활동과 원외 활동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의원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간다. 이러한 기준으로 원내활동을 분석하고(<표 3>) 이 관계를 도식화하면(<그림 1>) 다음과 같다.

15) 단, 원외 활동에 대한 학술적인 규정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한정택(2012)의 연구처럼 의정 평가를 위해 원외 활동을 규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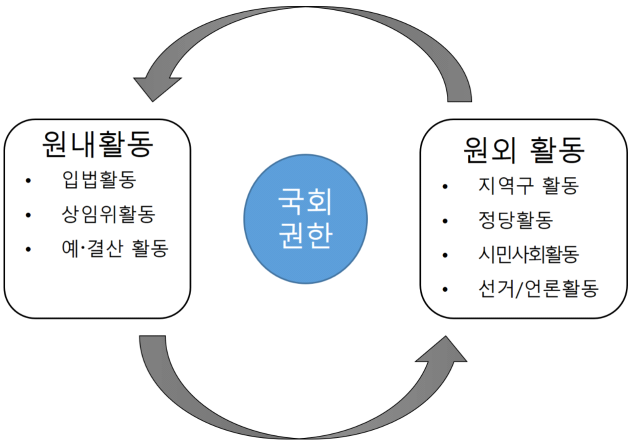

<그림 1> 원내활동과 원외 활동의 관계

4.2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바라본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임위원회는 사회 곳곳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들이 의제의 형태로 수렴되고 논의되는 현장으로, 정부 부처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와 정부는 함께 정책을 결정·심의한다. 새로 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고 각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원 구성이 마무리된다(박선민, 2020). 상임위원회는 2년의 임기를 가지며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 구성된다. 국회의원에게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축적해 갈 수 있는 기반이자, 자료 요구권·참고인/증인 소환권을 활용해 각종 현안과 문제에 대한 논점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부에 질의·비판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주된 공간이다. 입법 활동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헌법(제35·36·37조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제도와 활동에 대한 정치학 분야의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한국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현우, 2009).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핵심 기능인 "실질적인 법안의 발의 및 심사뿐 아니라 행정부 감시"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이러한 현상은 보편적이다(Davidson & Oleszeck, 1996, 이현우, 2009, 재인용).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한 법안을 본회의에서는 그대로 받아 의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의 예·결산 기능이나 법안 제·개정 및 심사 기능과 관련된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핵심 기능과 동력은 상임위원회와 직결된다. 상임위원회의 의사소통 방식은 다수결을 기본으로 하지만,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동시에 "심의(審議)를 통한 합의 도출"을 그 이상(理想)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석, 자유로운 의견 개진, 기회·비판의 균등한 기회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이현우, 2009, 147). 상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특정 국정 분야를 전담하는 상설 상임위원회'라는 분업 체계를 통해 "심의의 안정과 지속성을 제고시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박찬욱, 박찬표, 2005, 이현우, 2009, 150, 재인용; 박찬표, 1998, 이현우, 2009, 150, 재인용)으며, 행정부의 기능에 조응해 운영할 수 있다(Bimber, 1991; Krehbiel, 1991, 이현우, 2009, 재인용).

동시에 상임위원회는 의회정치의 기능을 상징하는 만큼 각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이 가지는 다양한 대표성과 이해관계가 한자리에서 충돌하며 각축을 벌이거나 이를 조정·조율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장이기도 하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의회가 달성해야 할 몇 가지 목적들 중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선 의회라는 국가적 논의의 장에서 자신의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의원들은 지역이해와 충돌할 수도 있는 국가이득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심의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의회는 소수의 권한을 보장하는 동시에 다수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의회는 국가와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융통성있게 대처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의회의 결정은 정책의 최종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숙고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이현우, 2009, 146)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의정활동은 '심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주로 정보와 이에 근거한 의견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먼저, 국회의원의 가진 자료요구권, 감·조사 청구권, 질의권을 활용하거나 민원·제보 등을 통해 확보한 지역·국가적 현안과 문제를 비롯한 공공 사안에 대한 정보가 상임위원회 활동의 출발점이 된다. 가령 행정부를 대상으로 질의·지적 시 현안과 그 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함께 논리를 개발할 필요[16]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획 단계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정제해 의원의 의견과 논리를 형성·강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복수의 의견(이견)들을 바탕으로 의사 진행, 관계자를 향한 질의와 진실 여부 확인, 위원 간 토론(토의) 활동에 참여하는 등 협의·숙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그 결과 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시정·결정하거나 법률을 심사·의결한다. 이를 도식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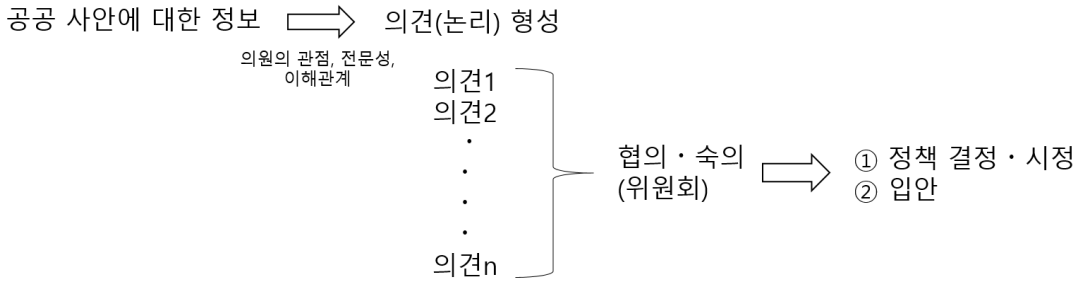

<그림 2> 상임위원회 제도를 통해 바라본 의정활동의 구조

주목할 만한 점은 의원이 의견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의·숙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개개인의 공공 사안·현안을 바라보는 관점과 전문성, 정치·국정에 대한 철학이나 이해관계, 다양한 대표성 등이 상당한 비중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더 자세하게, 상임위원회를 둘러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직무권한을 비롯해, 지역 예산이나 정책소관 범위와 같은 상임위별 고유한 특징, 의원 개인의 정치적 동기나 전문성,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 등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원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제약(김한나, 2018)을 받는다. 소속 정당을 예로 들면, 정당(지도부)은 의원 각각의 상임위원회 배정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지며, 국가적 현안에 대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정당을 대표하는 의견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한다. 이 당론은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 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Miller와 Stokes(1963)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은 크게 세 가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전체 선을 위하는 "독재성(獨裁性)을 가진 수탁자"로서의 대표성,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대리인으로서의 대표성, 그리고 정당 지도부 및 당론을 실천하며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성이 그것이다(Miller & Stokes

16) 상호 간 주장의 근거 제시는 '숙의적 대화'의 조건이기도 하다(노성종, 민영, 2009). "단순히 주장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는 과정은 기존의 민주주의 양식으로부터 숙의민주주의가 갖는 차별점이기도 하다"(Gutmann & Thompson, 1996, 노성종, 민영, 2009, 재인용)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1963, 이현우, 2009, 재인용).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해관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재선이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고 관장하는 개인적인 이해관계 및 요인이 있다. 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직무권한에 대한 의원 개인의 해석(무엇을 초석으로 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포함한다. 둘째, 바람직한 입법이나 정책 개발을 통한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가 있다. 이는 의원이 갖는 사회의 다양한 부문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비전이나 방향과 관계된다. 셋째,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일관적이고 광범위한 정책 결정을 위한 국회의 권위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등 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해관계이다. 넷째 정당의 당론이나 전략을 실천하고 재집권을 도모하는 등 정당의 이해관계다. 이와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이해관계들을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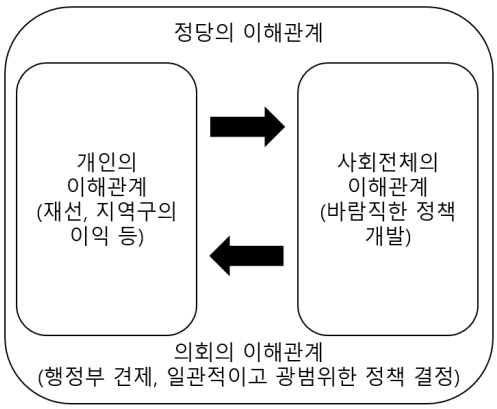

<그림 3>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요인(이해관계)

이처럼 매우 복잡한 요인과 이해관계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정활동이 의원 개인의 자율성, 즉 지역구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권력에의 야심이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17]로 하는 만큼, 상임위원회 안에서 각 의원이 어떤 목표나 이해관계를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 활동의 방향과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가지는 동기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의원 간 의정활동의 맥락과 특성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다. 이러한 자율성은 활동의 맥락을 탐구하고 주요한 의정활동 기록의 생산맥락을 찾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의원 개개인이 가지는 다양성이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의 주요한 특성이 되는 이유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구함으로써, 본고는 이러한 의정활동의 특성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기록화 대상의 개별적 특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 본 의정활동의 속성과 그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것에 그치긴 했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회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이 이처럼 다양한 요인과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원외 활동의 경우 비교적 개인사적 맥락과 함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과 그 기록의 생산맥락을 귀납적으로 살피고 이에 따른 분류체계 개발 등 기록화 전략을 수립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17)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주변의 반응이나 파급력 등과 상호작용하며 의원 스스로 만들어가거나 하나의 사명으로 확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원은 열려있고, 변화하며, 외부적 요인에 민감해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을 형성해가며 또 정치적 신뢰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적절히 이용한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4.3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의정활동의 효용

상임위원회 활동을 미루어 의정활동은 앞에서 언급했듯 크게 주제 선정을 비롯한 ① 기획, ② 자료요청 및 분석, ③ 의견과 논리 형성, ④ 질의·토의 등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물론 주장이 있고 이를 근거할 자료들을 색출하고 정련하는 식의 순서로 의정활동이 진행되거나, 간단하고 추상적인 의견이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해 더 정교화된 수준 높은 의견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자료와 근거를 통해 의견을 정돈하는 과정은 다른 관점과 의견을 가진 타인을 설득하거나 각각의 의견을 서로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노성종, 민영, 2009, 174)[18]. 가령 A 의원은 20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동부에 요청한 자료를 기반으로 견해와 방안을 만들고 정책집을 발간해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은 의회 기능에 참여한 각각의 의원의 관점으로 기록을 재배치하여 '숙의적 대화'의 한 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특히 숙의에서 중시되는 것은 의견-결론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와 근거를 통해 의견이 만들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숙의적 대화는 결론만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단 이러한 숙의의 과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나열이라기보다 기획·자료 요청·질의 등 의정활동 구조를 기반으로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과 모든 과정에 걸쳐 작용하는 의원 개별 관점이나 논점을 기록관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상임위원회의 질의 과정 중 특히 정부 정책과 활동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보도 자료·언론 활동의 근거가 된다. 특정 의원실에서 기획·확보한 자료와 의견을 기반으로 공공의 현안에 관한 기사[19]가 작성된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회의 발언권이나 질의권 역시 마찬가지다)은 시민이나 언론 등 권한이 없는 사람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국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수 확보할 수 있다. 그 결과 어떻게 국정 전반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사회를 이루는 각 주체인 시민-국가-시장[20]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과 조정을 포함하는, 즉 공공 사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이에 기반해 정책 시정이 요구·실현되는 등의 숙의 과정-"대화와 토론을 통한 심사숙고의 과정"(노성종, 민영, 2009, 174)-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기여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Lucas(1978)는 의회 컬렉션에는 지역에 기반한 태도나 현안·문제들, 지역 선거구에서 구현된 국민의 관심사, 지역에서 이루어져 온 개발, 경제·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 지역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지역구민을 비롯한 유권자들의 관심사가 국회의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지역구민을 비롯한 유권자들과 정부를 매개(interface)한다는 사실과 맞닿아있다.

당사자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의 관점에서 의정활동 기록의 효용을 상상해 볼 때, 시민의 삶 속에 '정치' 혹은 '의정활동'이 어떤 효용을 가질 수 있는가? 의정활동의 결과, 국민의 알 권리 혹은 그를 통한 지적·시정 등 해당 자료가 다양한 주체에게 쓰이고 있는 현재적(current) 효용과 이를 기록화하고 후대가 이를 들여다볼 때(non current)의 효용은 어떻게 다를까? 앞으로도 의정활동뿐 아니라 숙의·참여를 비롯한 (범용적인) 정치에 담긴 다양한 효용과 가치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의정활동 기록, 나아가 의정활동 아카이브가 담을 수 있는 가치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러한 가치를 기반으로 의정활동 기록에 담긴 풍부한 의미를 전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18) "공적인 사안, 의견불일치, 이견의 경청을 통한 지식의 확장, 사안과 자신의 의견에 대한 심사숙고, 대화를 통한 상호 간 이해 및 신뢰형성, 양질의 의견형성과 의사결정 등은 숙의의 과정이자 결과다."(Bohman, 1996, 노성종, 민영, 2009, 재인용; Chambers, 2003; Fishkin, 1995; Mendelberg, 2002)

19) 2024년 9월 23일자 한겨레 주요 기사 중 '체코 원전 수출' 관련 내용이나 '방통위 소송 예산 남용'에 관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특정 의원실에서 기획·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다수 찾아볼 수 있다.

20) 각 주체 사이에 이음줄을 표시한 이유는 이러한 주체들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과 상황이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이 기록화 전후에 전제될 때 비로소 의정활동 기록이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이어가고자 한다.

5. 결론: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화를 위한 제언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은 사회의 구조를 담아내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를 기록화하는 것은 사회적 맥락을 연결하고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미래 사회의 구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갈등, 조정, 합의 등에 이르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기록이 국회의원(실)에 축적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이 단순히 공(公)이 아닌 공(共, common)적 기록으로서 정치문화를 형성해가는 등 문화적 가치 역시 상당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13년 이후 10여 년간 국회 기록 정책의 진보를 위해 연구자를 비롯한 실무자,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21]. 그럼에도, 지금껏 '공공기록물'이라는 모호한 개념 아래 전통적 생애주기 모델의 관점에 머무르며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업무·기능·조직에 대한 분석과 제도화 시도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이 의원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그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의정활동 기록을 단지 시스템을 통한 관리, 혹은 감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일부 관점으로 인해 기록화 실천이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국내 기록학계가 '국가'[22] 혹은 '공공'의 개념과 역할을 한정적·소극적으로 인식해왔고, 관리의 편의와 제도화만을 앞세운 결과 역설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을 둘러싼 맥락과 고유한 성격에 대한 고찰과 그 풍부한 효용을 모색할 기회를 놓쳐왔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공적 기능'에 대한 기존 관점, 공적 영역을 공공기관이나 공무원과 같은 공(公, Official)의 영역에 한정하는 해석은, 정치와 공공성에 대해 새롭게 상상하거나 풍부한 정치문화를 형성해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삶에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이라는 언어가 부정적 프레임에 갇혀 고립된 상태로 남아있게 하며 사람들 사이에 함께(共) 만들어가는 영역의 진보를 매우 더디게 한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집약적인 기술 발전으로 세계적으로 혁신적 성장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정치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은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갈등과 소외를 초래하며 건강한 정치문화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태선, 2023).

전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원내활동 기록은 국회의원이 갖는 다양한 대표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한자리에서 충돌하며 각축을 벌이거나, 이를 조정·조율해 가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녹아있다. 이뿐 아니라 대표적인 원외 활동인 정당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 등은 국회의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는

21) 2014년 3월 '국회기록보존소 발전전략 로드맵 재정비'가 있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신계륜 의원실의 요청으로 '국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 작성을 한 바 있으며, 2016년 11월 '국회의원 기록관리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를 주제로 한 이재정 의원실 주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를 영향으로 국회도서관 직무에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정리·보존·평가·활용"을 신설하고 국회의원 기록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19대 국회 교체의원실을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 시범사업을 추진했다(20개 의원실에서 157상자, 총 2,369점의 기록이 수집됨). 2017년에는 다시 이재정 의원실 주도로 법제실에 관련 법률안을 의뢰한 바 있고, 2020년에는 제20대 국회를 교체의원실을 대상으로 기록물을 추가 수집(14개 의원실 약 45상자)하였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회도서관 내 국회도서관법 개정 T/F를 구성하여 국회의원기록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미반영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김장환, 2023).

22) 가령 '국가재정을 투입해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서복경 2023)으로 정의한다면, 실제로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이 큰 비중으로 쓰이는 의정활동의 맥락은 가려질 수 있다. 협의의 국가재정은 국회의원 개인의 보수, 의원실 운영을 위한 보좌진 급여,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국회 소속기관의 예산을 들 수 있으나 시민의 자발적 후원을 통해 모금되는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간과하고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치후원금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 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모금가능액을 초과한 경우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비춰 공적자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

활동으로, 개별 국회의원 의정활동뿐 아니라 의회 기능의 총체적 맥락을 이해하고 보완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이러한 기록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데 국회의원 개인의 고유한 관점과 그에 영향을 끼친 개인적 특성과 내외적 환경 등 '개인 기록'의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능은 국회의원(실) 기록을 포함한 국회 의정활동 기록을 수집·보존·활용하는 데까지 그 의미와 실재적 기능이 확장되어야 한다. 확장된 기능을 바탕으로 정치영역에서의 상징적 기관으로 거듭나 사회, 문화, 역사에서 맥락을 기록하고 이를 영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박태선, 2023). 이를 위해서 향후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각 기관을 총괄할 권한과 자원을 가진 기관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 수집 범위는 '행정기록'이 아닌 '민의가 모인 기록'이라는 관점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의정활동 기록이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기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기록물관리규칙. 국회규칙 제164호.

국회기록보존소 (2017).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수집·관리 기본 정책.

국회기록보존소 (2020).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국회도서관 (2023). 2023 국회도서관 연간보고서.

국회사무처 (2024). 법제기준과 실제.

김장환 (2018).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55, 39-71.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39

김장환 (2023. 12. 15.). 토론문.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서울.

김한나 (2018).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표와 상임위원회 활동의 정치적 결과 : 제 18대, 제 19대 국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노성종, 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3), 173-197.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2023). 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 : 을지로위원회 10주년 기념 녹서. 서울: 더봄.

박선민 (2020). 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서울: 후마니타스.

박찬욱, 박찬표 (2005). 국회 전문보좌조직의 강화 방안. 의정연구, 11(2), 5-33. 재인용: 이현우 (2009).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145-176.

박찬표 (1998). 발표논문. 국회상임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2차 한국정치포럼. 서울. 재인용: 이현우 (2009).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145-176.

박태선 (2023). 정치영역 아카이브의 사회적 공공성-정치의식과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복경 (2023. 12. 15.). 토론문.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 연구.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서울.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https://doi.org/10.20923/kjas.2017.53.079

우윤식 (2019). 의원기록물관리를 위한 의원기록관 설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음선필 (2013). 민주적 통제로서의 국회의원 평가. 일감법학, 26, 419-462.

https://doi.org/10.35148/ILSILR.2013..26.419
이원영 (2004). 의회기록의 특질과 종류. 기록학연구, 9, 110-142. https://doi.org/10.20923/KJAS.2004.9.110
이정희, 윤종빈 (2003). 한국에서의 의정활동평가: 주체, 방법, 정치적 함의. NGO연구, 1, 181-210.
이현우 (2009).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145-176.
장연희, 윤은하 (2024).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 방안-보좌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주현미 (2021). 노회찬 아카이브 기초 연구. 기록학연구, 68, 243-27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243
최혜영, 이승일 (2019).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개선 방안 연구: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3), 97-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고양: 역사비평사.
한은정, 임진희 (2009). 국회의원 활동기록의 특성과 관리방향. 기록학연구, 21, 117-167. https://doi.org/10.20923/KJAS.2009.21.117
한정택 (2012). 제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원외 활동 평가 모델의 탐색. 의정연구, 18(1), 43-74.
황길례 (2010). 우리나라 국회의원 개인기록 수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Bimber, B. (1991). Information as a Factor in Congressional Politic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6(4), 585-605.
Bohman, J. (1996). Public deliberation: Pluralism, complexity, and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재인용: 노성종, 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3), 173-197.
Chambers, S. (2003). Deliberative democratic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6, 307-326. https://doi.org/10.1146/annurev.polisci.6.121901.085538
Davidson, R. H. & Oleszek, W. J. (1996). Congress and Its Members (5th ed.). Washington D. C.: CQ Press. 재인용: 이현우 (2009).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145-176.
Fishkin, J. S. (1995). The voice of the people: Public opinion and democracy. New Haven, CN: Yale University Press.
Gutmann, A. & Thompson, D. F. (1996). Democracy and disagreement. Cambridge, MA:Belknap Press. 재인용: 노성종, 민영 (2009). '숙의'와 '참여'의 공존 : 대화의 숙의수준에 따른 정치적 이견의 경험과 정치참여의 관계 탐색. 한국언론학보, 53(3), 173-197.
Krehbiel, K. (1991).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재인용: 이현우 (2009).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145-176.
Lucas, L. (1978). Managing Congressional Papers: A Repository View. The American Archivist, 41(3), 275-280.
Mendelberg, T. (2002). The deliberative citizen: Theory and evidence. In Delli Carpini, M. X., Huddy, L., & Shapiro, R. Y. (Eds.), Political Decsision Making,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Research in Micropolitics(Vol. 6). Greenwich, CT: JAL press, 151-193.
Miller, W. E. & Stokes, D. E. (1963). Constituency Influence in Congres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1), 45-56. 재인용: 이현우 (2009). 국회 상임위원회의 운영: 전문성과 대표성의 재평가. 의정연구, 15(1), 145-176.
Weber, M. (1919). Politik als Beruf. 전성우 옮김(2019). 직업으로서의 정치. 파주: 나남.
Weir, S. & Beetham, D. (1999). Political Power and Democratic Control in Britain. UK: Routledge. 재인용: 음선필 (2013). 민주적 통제로서의 국회의원 평가. 일감법학, 26, 419-462.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Hye Young & Lee, Seungil (2019).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System: Parliament Activity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3), 97-121.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3.097

Eum, Sunpil (2013). Evaluating Assemblymen as a Democratic Control. Ilkam law review, 26, 419-462. https://doi.org/10.35148/ILSILR.2013..26.419

Han, Eun-Jeong & Yim, Jin-Hee (2009). The Characteristics and Maintenance of Assemblypersons' Activity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117-167. https://doi.org/10.20923/kjas.2009.21.117

Han, JungTaek (2012). Assessment of the Congressional Activities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 Developing a Model for Evaluation of External Assembly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8(1), 43-74.

Hwang, Gil Lye (2010). A Study on the Acquisition Policy of Korean National Assemblymen's Personal Record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Jang, YeonHee & Yoon, Eun-Ha (2024).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cords Management in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Focusing on the Percep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i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1), 187-204.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187

Ju, Hyun Mi (2021). A Pre-study on Roh Hoe-chan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8, 243-279. https://doi.org/10.20923/kjas.2021.68.243

Kim, Hanna (2018). Political goals of lawmakers and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standing committee activities: Focusing on the 18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im, Janghwan (2018).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5, 39-71. https://doi.org/10.20923/kjas.2018.55.039

Kim, Janghwan (2023, December 15). Discussion paper. Parliamentary Debates for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Seoul.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Glossary of Archival Terms. Goyang: Historical Criticism Publishing Company.

Lee, Chung-hee & Yoon, Jong-bin (2003). A Study on the Rating System of Legislative Activities in Korea. The Journal of NGO Studies, 1, 181-210.

Lee, Hyeon-Woo (2009). Evaluation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n Assembly: Focusing on Specialization and Representation.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5(1), 145-176.

Lee, WonYoung (2004). A Study of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Congressional Record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9, 110-142. https://doi.org/10.20923/KJAS.2004.9.110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17). Basic policy for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activity records.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0). Records Management Manual for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Library (2023).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National Assembly Regulation No. 164.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2024). Legislation and Practice.

Oh, Myung Jin (2017). The Nature of Personal Papers and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erson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3, 79-117. https://doi.org/10.20923/kjas.2017.53.079

Park, Chan Pyo (1998). Presented paper. Plan to revitalize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Korea Political Party and Politics Institute 2nd Korean Politics Forum. Seoul.

Park, Chan Wook & Park, Chan Pyo (2005). Enhancing the Korean National Assembly's Specialized Staff Organization for Legislative Research and Drafting Service.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11(2), 5-33.

Park, Sunmin (2020). A Space of Possibility Called the National Assembly : the National Assembly Manual for Good Politics. Seoul: Homanitas.

Park, Taesun (2023). The social publicness of political sphere archives- A Centered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with Political Consciousness -. Doctoral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Roh, Sungjong & Min, Young (2009). The Coexistence of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 The Moderating Effects of Deliberative Political Dialogu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oss-Cutting Exposur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3(3), 173-197.

Seo, Bok-Kyung (2023, December 15). Discussion paper.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Parliamentary Debates for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liamentary Activity Record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Seoul.

The Minjoo Party of Korea People's Livelihood Action Committee to Protect 'Eul' (2023). The Democratic Party Reigning Strategy Report: Why Did You Fail, and What Are You Challenging With? : Euljiro Committee's 10th Anniversary Green Paper, Seoul: The BOM.

Woo, Yunsik (2019).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Center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Records Management,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Korea.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4.047